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기금의 예치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서 구 금고로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관의 관직을 전문개정(2004.1.30)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현행 조례 제명 및 상위법령 인용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
- 나. 종전에 건설교통국장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던 것을 삭제하고, 이에 맞추어 기금운용관의 관직 “건설교통국장”을 “토목과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 다. 기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하여 기금예탁 기관을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서 구 금고로 통합·관리하여 기금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III. 검토의견

1.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2004. 1. 30. 전문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규칙(규칙 제446호)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관은 “기금별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별 담당과 업무담당으로” 관직이 변경되었기 이에 따라 종전 기금운용관의 관직 건설교통국장을 삭제하고, 토목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은 현행 규칙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 또한 안 제2조제3항의 규정에서 기금은 은행법·단기금융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 기금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위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 금고”로 변경하여 통합 관리·운용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기타 개정하려는 내용은 일부 자구수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IV.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규칙

[전문개정 2004. 1. 30 규칙 제446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단, 해당기금에 있어서는 설치조례에 관직지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1. 본 청

징수관 - 재무국장

분임징수관 -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국장

경리관 - 재무국장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각 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 재무국장

채권관리관 - 소관과장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담당과장

채무관리관 - 소관과장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담당과장

기금운용관 - 기금별 담당관(과)장

기금출납원 - 기금별 담당관(과)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

지출원 - 재무과 지출담당주사

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 - 세무1과 세입총괄담당주사, 세무2과 세무
관리담당주사 및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주사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과장

일상경비출납원 - 각과 주무담당주사.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지정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주무자

2. 구의회

징수관 - 사무국장

경리관 - 사무국장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수입금출납원 - 출납주무자

일상경비출납원 - 의정담당주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주무자

3. 보건소

징수관 - 보건소장

경리관 - 보건소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분임경리관 - 보건행정과장, 각 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채권관리관 - 보건소장

채무관리관 - 보건소장

지출원 - 보건기획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일상경비출납원 - 각과 주무담당주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주무자

4. 동

징수관 - 동장
경리관 - 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채권관리관 - 동장
지출원 - 주무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 주무주사
도급경비취급공무원 - 주무주사
일상경비출납원 - 주무주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주무자

②직제의 변경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지출원과 현금출납원의 직무가 겸하게 되는 경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장이 이를 분리 지정하거나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조자는 주관과장("발주하거나 설계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한다."이하 같다)과 재무과장("계약을 담당하는 과장"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회계관계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